

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1. . .
발 의 자	김태근 의원 외 5명

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(김태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. .

발 의 자 : 김태근 · 권재욱 · 김낙관 · 김영길
안장환 · 양진오 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농어촌 청소년 운동 및 농어업 후계 인력의 농어촌 정착 등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4에이치활동 사업(안 제3조)
- 나. 지원계획 수립, 지원대상(안 제4조~5조)
- 다. 보조금 지원(안 제6조)
- 라. 사업계획 제출, 결산보고(제7조~8조)
- 마. 지도·검사(안 제9조)

3. 조 례 안 : 불 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불임)

다.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6. 28. ~ 7. 5.)결과 의견없음

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미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)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기초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
2.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·국외 연수
3.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위하여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시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구성되어 제2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.

제6조(보조금지원) 시장은 제3조에 따른 4에이치활동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계획 제출)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8조(결산보고) 4에이치활동 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
2.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

제9조(지도·검사)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·검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4에이치”란 명석한 머리[Head, 지육], 충성스런 마음[Heart, 덕육], 부지런한 손[Hands, 노육] 및 건강한 몸[Health, 체육]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[4-H]을 말한다.

2. “4에이치활동”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.

가.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·문화활동,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

나. 4에이치 이념을 확산·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

다.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

라.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

제5조(경비지원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,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기초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 활동, 국내·국외 교육 연수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(안 제3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기초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 활동, 국내·국외 교육 연수의 규모 및 범위가 광범위하여 소요 재정의 추계가 어려움.

4. 작성자

- 농촌지원과 지도육성계 최예빈(480-4223)